###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울특별시장

**포치어게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263 ] www.pochaa.ne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12.24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1.06.01.]

# 포차어게인

#### 정 보 공 개 서

(주)가업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식회사 가업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 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01, 827호(마곡동,

동익드미라벨복합빌딩)

대표전화번호: 1544-2292 / 대표팩스번호: 02-6008-9242

구이가 가맹사업부 : 1544-2292

# 목 차

т	가매보보이	일반 현황
1.	778877	르인 현경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
νш.	— 1 — —	, , , , , , , , , , , , , , , ,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 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포차어게인 외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01 827호(마곡동, 동					
	エバリ	게 한 커4	익드미라벨복합빌딩)					
 (주)가업FC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8.4.	2006.8.4.	2006.8.4.	배승찬	1544-2292		02-6008-9242	
	법인등록번호 110111-		-3505752	사업자등록번호 105-		-86-94656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상호/이름	시	용 브랜드	<u>.                                    </u>			주 소		
	배승찬	₩ =	포차어게인 외4		서울특	투별시	강서구 마곡서	]로	101 827호(마곡
사용인	(주)가업FC	・・・・・・・・・・・・・・・・・・・・・・・・・・・・・・・・・・・・・・	4억계원 3	44	동, 동	익드미	라벨복합빌딩	)	
(임원)	사업(	경영)	기간		대3	도자	대표전화번호	<u> </u>	대표팩스번호
	2006. 8	3. 4. Î	~ 현재		배증	승찬	1544-2292		02-6008-9242
관계	상호/이름	사	용 브랜드	<u>.</u>			주 소		
	류미선 3		교리시키시 이 4		서울특	투별시	강서구 마곡서	]로	101 827호(마곡
사용인	开門包	포차어게인 외4		동, 동익드미라벨복합빌딩)					
(임원)	사업(경영)기간				대3	도자	대표전화번호	<u> </u>	대표팩스번호
	2015. 8. 1. ~ 현재			배승	· 당찬	1544-2292		02-6008-9242	
관계	이름/상호	영	업표지				주 소		
					7	경기도	파주시 청석호	€ 2′	72,10층
	배승찬/	す	ス애쿠		1004-F367호(동패동,센타프라자)			프라자)	
계열회사	홈즈앤쿡		홈즈앤쿡		대표기	4	대표전화번호	<u>ই</u>	대표팩스번호
					배승침	<u></u>	1544-2292		02-6008-9242
	법인등록번	호	개인/	나업:	자	사업	자등록번호		158-14-01417

###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포차어게인	
상 호	포차어게인 OO점	
상표(서비스표)	王がユユ	상표등록 401789739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포차어게인	상표등록 4103766350000

※기존의 포차어게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나 신규계약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영업표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백원이하 삭제,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8,785,529	6,694,400	2,091,128	4,907,364	-702,201	20,421
2022년	6,044,160	4,669,969	1,374,190	2,912,484	-517,135	-716,938
2023년	5,122,898	4,939,019	183,879	847,898	-1,078,490	-1,190,311

- ※ 가맹본부의 최근3개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구이가 가맹사업(가맹사업시작일 2006.8월)과 포차어게인(가맹사업시작일 2015.11월), 도쿄술집(가맹사업시작일 2018,1월), 호박치킨(가맹사업시작일 2019.3월), 메타피자(예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성식당 2021.4월, 치킨뱅3.0 2022.3월 신규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ਲੀ ਸ਼ੀ	개인별 경력				
41	성명	경력기간	/ 경력내용	경력증빙		
대표이사	배승찬	2004. 1. ~ 2006. 7.	(주)썬미트 부장	경력증빙자료 없음		
		2006. 9. ~ 현재	(주)가업FC 대표이사			
감사	류미선	2015. 8. ~ 현재	(주)가업FC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식선구(형)	
2023년 12월 31일	1	1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06.8.~현재	구이가(등록번호: 20080100117)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15.11.~현재	포차어게인(등록번호: 20151263)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18.01 <sup>~</sup> 현재	도쿄술집(등록번호:20180191) 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18.07~2021.4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함	칠성식당(등록번호: 20180623)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19.03~현재	호박치킨(등록번호:20190412) 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2020.07~2022.03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함	치킨뱅3.0(등록번호:20201200) 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가업FC	가맹사업 경영	예 정	메타피자(등록번호:20212777)

				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티스코게이	홈즈앤쿡/		2024.4월	홈즈앤쿡(등록번호:20211069)
특수관계인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를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계열회사)	배승찬		자진취소함	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포치어게인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등록 2016.11.03	등록 4103766350000	(주)가업FC	2026.11.03
<b>포치고고</b>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 2021.10.20	등록 4017897390000	(주)가업FC	2031.10.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포차어게인 가맹사업 현황

1. 포차어게인을 시작한 날: 2015년 11월 30일(추정일)

### 2. 포차고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가업FC	포차어게인	배승찬	2015.11.~2019.1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 코오롱디지털타워705, 706호
(주)가업FC	포차고고	배승찬	2019.10~2020.08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 코오롱디지털타워705, 706호
(주)가업FC	포차고고 (포차어게인)	배승찬	2020.08~202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01 827호,828호~831호(마곡동,동익드 미라벨복합빌딩)
(주)가업FC	포차어게인	배승찬	2024.4 ~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01 827호,828호~831호(마곡동,동익드 미라벨복합빌딩)

### 3. 포차고고 업종

영업표지	업종			
포차어게인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포차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포차어게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	2021.12.31	•	4	2022.12.31	ļ.	6	2023.12.31	-•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3	23		17	17		10	10	
서울	3	3		1	1		1	1	
부산									
대구	1	1		1	1		1	1	
인천	1	1		1	1		1	1	
광주	1	1							
대전									
울산				1	1				
세종									
경기	10	10	·	8	8		4	4	

강원	2	2	1	1	1	1	
충북 충남 전북	1	1	1	1	1	1	
충남	1	1	1	1			
전북			1	1	1	1	
전남	1	1	1	1			
경북	2	2					
전남 경북 경남					·		
제주							

#### 5. 최근 3년간 포차어게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6	1	0	14	1	23
2022	23	0	0	6	0	17
2023	17	0	0	7	0	10

[포차어게인]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포차고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丁七	경오/이급	3 1 표 기	등록번호	월경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가업FC	구이가	20080100117	외식	16/-	13/-	12/-	
가맹본부	(주)가업FC	포차고고	20151263	포차	23/-	17/-	10/-	
(당브랜드)	「一一」「日下し	エイエエ	20131263	조사	23/-	17/-	10/-	
가맹본부	(주)가업FC	도쿄술집	20180191	주점	8/1	9/-	9/-	
가맹본부	(주)가업FC	호박치킨	20190412	치킨	1/-	-/-	-/-	
가맹본부	(주)가업FC	메타피자	20212777	피자	-/-	-/-	-/-	

- ※ 칠성식당은 2021.4월, 치킨뱅3.0은 2022.3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인의 홈즈앤쿡은 2024.4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기메저스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	출액(상한)	연간평균 헌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6개월미만 영업제외
전체	10	193,084	4,697	289,201	8,128	76,435	1,992	
서울	1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4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해당없음						
전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2,438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위: 천원, 부ː	가세 미포함)	비고
下七	구인	<u>/</u>   1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끄
합계		2023.1~2023.12	79,613	79,613	_	
광고	소계		79,613	79,613	_	
판촉	소계		_	_	_	

<sup>※</sup> 당사는 구이가, 포차어게인, 도쿄술집, 호박치킨, 메타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맹사업과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전체 비용이며, 당 가맹사업운영에 관련 광고 비 및 판촉비는 이보다 적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기업은행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02-783-803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 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 3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 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4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영업표지 사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교육시작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1,000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인 가입비 (30%)와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30%), 개설지원대가(30%),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해당없음			
총계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보증금 0		
합계	1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기준: 66㎡[20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공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비공개)	36,000	1,800	계약금: 계약체결과 동시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3.3㎡ 당 1,800천원
간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비공개)	4,000~ 8,000			제작 전 계약취소	전면간판, 돌출간판, 내부 사인물
의탁자	지정업체 (비공개)	3,500~ 8,000		중도금: 공사 시작 후 (1)일까지	제작 전 계약취소	테이블, 의자 총 40석(테이블 10개~12개)
주방,홀 설비 및 집기	지정업체 (비공개)	10,000~ 25,000	500~1,250	잔금: 기물입고전 (2)일전까지	제작 전 계약취소	냉동고, 냉장고, 화구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비공개)	4,000~ 5,000			발주 전 계약취소	식재료 음료/주류, 소스 등
POS	지정업체 (비공개)	2,000			발주 전 계약취소	
총계		59,500~ 84,000	2,975~4,2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 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도비용: 각종 인허가,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음향,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디자인설계 및 관리감독 등의 대가로  $3.3\text{m}^2$  기준으로 22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점포계약)
一上	※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맹점사업자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심신미약자 및 노약자가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T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카드매출3.3%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 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일 당 275				숙박,교통비 별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1,500~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4]%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물류프로그 램	(비공개)	월 22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비공개)	사용대가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가맹비	1,100	재계약 전 7일		계약기간 내에 가 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사유로 계약 이 해지	후 매년(1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통상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차어게인"임을 알 수 있는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포차어게인" 가맹점을 운영했던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계약종료 일로부터 1년 동안은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기로 합니다.

### 5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포자어게인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경제적 이익은 당사의 가맹사업인 구이가, 포차어게인, 도쿄술집의 이익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은 이보다 적습니다.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열사	해당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 설심[전 배 경임디스트]   참조	제품을 판매할 수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삼조 	없음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기계시에비버 그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3.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포차 전문점	포차어게인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설정기준에 따름

# 포자어게인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		영업지역 변경(안)을
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당사 담당팀 검토 →	30일 이내에 동의
변동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 작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성 → 가맹점사업자에	동의가 있는 경우 15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게 서면 통지 → 가맹	일 이내에 영업지역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점사업자 동의 → 영	재조정 완료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업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인정되는 경우		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世 시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D-100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	①+15일 이내
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0월 이대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	D 100 ~ D 00
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	D (00) 617
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관련 계약조문 6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관련 계약조문 37조 1항 참조

- 1. 가맹점사업자가 원 ·부재료비,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 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7.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8. 영업상 비밀보호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 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16.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17.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18. 가맹점이 포스에 현금매출을 미입력하거나 기타 다른 사업장으로 매출 입력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매출을 축소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계약조문 37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 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 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40일 전) $\rightarrow$ 당	
○ 아스이지 다리가 가장	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무의: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25일 전)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_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계약 체결(5일소요, 교육비 등 지급) → 양수인 교	
	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양수인에게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요건에 충족될 경우 가맹본부의 요구/권유에 따라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 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업무위탁	불가능	_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포차어게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수듀들 전문으로 판매하는 │ │ 어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관리본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교
10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면 이 · ㅇ 여 코 크 보 보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후 변경)	필쇼필, 증유될 세기 영업	문의: 운영관리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 건즈이 베이키 키케키즈	점주의 부재시
3 7 7 8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운영관리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1	광고 성격	부담비율		보다. 건의	ען ¬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브랜드 및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0 17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행사
기타 개별 행사		없음	100%	가맹점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자체 부담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 스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ul><li>(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li><li>→ (가맹본부) 자료제출일</li><li>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li><li>송금</li></ul>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5항 (판촉)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 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내용					
	_ , , , = , ,	계약조문			
Ò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 중단 및 철거 등)을 지키지 않	관련			
	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	계약조문			
	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Ó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 중도계약해지 및 폐점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각 조항에 위약금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이 본조의 위약금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해지일 직전12개월 "월 평균 물류매출액"의 5% + 로열티] x <b>A</b>	37조5항			
	A: 잔여계약기간 기준 : 1년미만시 12개월분, 1년이상 시 잔여 계약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물류매출액으로 계산				
;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해당월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 로 운영한 월만 기준에 산입				
Ó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				
	전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40조			
	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9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및 제37조 제2항의 7호(."가맹점"이 가맹점운영	41 7			
	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가	41조			
	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제37조 제 1항16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손해를 입힐 시에 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6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66m²)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4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li><li>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_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6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위되게기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제외사유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CRM	해당없음				진행시
테스터	해당없음				사전협의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운영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운영본부 부담	문의: 운영관 리본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관 리본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주류업체로부터
(무이자대출)	주류 업체	0~5,000만원	신용 대출	주류를 공급받을
(무의자대물)				조건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당사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 8

###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6일(이론 3일, 현장 3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청구	필요시 마다 사전고지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1항 (계약의 해지)
19FH 9F78 T.	[세SU도 18 (세탁취 경인과 기절)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제19조 1항 (교육과 훈련)

### 9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설비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품목	메뉴	권장가격	비고
69메뉴	마약콘치즈	6,900	
	스팸후라이	6,900	
	양념감자	6,900	
	후르츠황도	6,900	
	매콤번데기탕	6,900	
	만두똥집탕수육	6,900	
89메뉴	추억의 치즈쏘야	8,900	
	반건조오징어와 땅콩	8,900	
	피자탕수육	8,900	
	오꼬노미야끼	8,900	
	닭강정	8,900	
구이와얄개들	고갈비	14,000	
	양념고갈비	15,000	
	두부김치	15,000	
	포차김삼두	21,000	
	먹태	13,000	
	골뱅이무침	17,000	
	모듬소시지	18,000	
	토마토치킨샐러드	18,000	
	가쓰오계란말이	13,000	
	대게&새우튀김	14,000	
	치즈볼&우유튀김	8,900	
	참치김치찌개	20,000	
	데리야끼통마늘똥집볶음	13,000	
	매운데리야끼통마늘똥집볶음	13,000	
	아이스과일	8,900	
	꿀토마토	5,900	
	모듬튀김	3,000	
	비빔만두	8,900	
	모둠 마른안주	13,000	
	나쵸&치즈소스	6,900	
	길거리떡볶이	6,900	
	옛날 왕 돈까스	10,000	
	해물찜	27,000	
	고르곤졸라피자	9,000	
튀김과볶음	후라이드치킨	17,000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북경깐풍기	17,000	
	모여라감자튀김	12,000	
	 통통촬리새우	17,000	
	 등마늘똥집튀김	13,000	

	옛날돈까스	10,000
	우삼겹숙주볶음	14,000
	매운돼지볶음	17,000
	오돌뼈와 주먹밥	18,000
	석쇠깻잎불고기	17,000
	닭똥집볶음	13,000
	순대볶음	10,000
	치즈불닭	15,000
탕과찌개	해물계란탕	10,000
	모듬어묵탕	21,000
	돼지두부찌개	20,000
	알탕	18,000
	조개탕	19,000
	해물짬뽕탕	19,000
	나가사끼짬뽕탕	19,000
	햄폭탄부대찌개	18,000
	해물누룽지탕	19,000
	닭한마리	21,000
	고구마 닭볶음탕	21,000
	바지락술국	13,000
	태양초고추장찌개	16,000

<sup>\*</sup>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

### [별첨]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_ , , , _			, ,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 I O D 게(Y) 'U 'O ' Y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 ,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바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귀	ਡ <u>ੀ</u>	
	지점장	∨ <sub>l</sub>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포차어게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 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절취선)	
	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바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수령인(가맹희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인근가맹 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수령자 (인)	
항목	자필 기재	자필확인 (서명/인감)
브랜드 명		
가맹본부명		
제공일시		
제공받은 장소	소재	
문서에 기재된 인근가맹점 수		
수령자 관련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은 사실 확인	(기재례: 이상과 같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부를 제공받 았습니다)	
<b>&lt;첨부서류&gt;</b> 신	분증 사본 1부	
<제공자 확인	<b>라&gt;</b>	
	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맹희망자	에게 201 인근가맹점현황문서 2	t 1부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 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